

-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833
------------	-----

2019년 8월 28일  
교 통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7일, 김상훈 의원 외 10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다. 상정일자

-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2019년 8월 28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상훈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택시요금 1만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카드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 2020년 1월 1일부터는 소액 택시요금 카드수수료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임

- 택시요금에 대한 카드결제가 일상화 되어 있어 택시 카드결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소액 택시요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택시요금 카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택시업계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킴과 동시에 택시이용 시민의 카드결제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동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의 유효기간을 기존 “2019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변경함 (안 부칙 제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6. 8. 19 ~ 26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부결

- ▶ '10년 이후 약 10년간의 카드수수료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여 카드결제율이 '07년 3.5%→'19.6월 79.8%로 크게 증가하

## 여 예산지원의 목적 달성

- '07년 3.5% → '10년 38.9% → '15년 62.2% → '19.6월 79.8%

- ▶ 개인택시의 경우 '19.2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증가 혜택을 그대로 받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카드수수료 지원은 설득력이 약함

- 개인사업자 예산 지원은 타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므로 지원 명분 부족

- ▶ 다만, 법인택시의 경우 시·조합 간 협약에 의해 요금인상 후 6개월간 수입 증가분 전액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하고 있어 아직 인상효과를 못보고 있음
- ▶ 따라서 사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예산 지원은 기간연장보다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택시요금 1만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카드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원토록 하고 있는 것을 “2021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코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동 조례는 2011년 12월 29일 제정 당시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토록 했으나, 2013년<sup>1)</sup>, 2015년<sup>2)</sup>, 2017년<sup>3)</sup> 각각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기간을 2년씩 연장하여 현행과 같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음
- 그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에 대한 보조금은 2012년 61억 47백만원에서 2017년 113억 10백만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가 2019년에는 56억 50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음<sup>4)</sup>

※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결제 및 수수료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카드결제율 (%)	44.7	50.3	58.8	59.2	62.2	67.4	70.6	73.6	-
카드수수료 보조금(시비)	미지원	6,147	7,688	7,900	7,900	9,100	11,310	11,300	5,650

1) 2013.10.4. 일부개정·시행

2) 2015.10.8. 일부개정·시행

3) 2017.12.28. 일부개정·시행

4) 법인택시 35억 50백만원 / 개인택시 21억원

○ 한편, 서울시는 2019년의 경우 법인택시는 주간<sup>5)</sup> 5천원 이하, 야간<sup>6)</sup> 6천원 이하의 소액 택시요금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반면 개인택시는 심야시간대 운행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주간에 지원 없이 야간에만 8천원 이하일 때 지원하고 있음

○ 택시요금 카드결제율이 2018년 기준 73.6%까지 증가하는 등 카드결제가 활성화 된 것은 택시카드 결제기 의무화 시행과<sup>7)</sup> 더불어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의 지속적인 지원 등에 기인한 것인 바,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동 개정조례안은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한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시키고, 택시 이용 시민의 소액 요금에 대한 카드결제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2012년 서울시가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처음 추진하면서 시행한 투자심사를<sup>8)</sup> 통해 “향후 직접적인 보조 보다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 제도적 대안을 모색·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의 ‘조건부 추진’ 의견을 받았다는 점,

2019년 2월 16일 각종 택시 운송원가 변동요인과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택시요금이 크게 인상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시점에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축소 및 폐지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

5) 주간시간대 : 08시~20시(12시간)

6) 야간시간대 : 20시~익일08시(12시간)

7) 시행 : 2012.7.1 / 방법 : 사업 개선명령, 위반시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 일부정지 20일

8) 2012.9월 투자심사 결과보고 : 재정담당관-11232(2012.10.8.)

※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2019.2.16.) 전·후 비교

구 분		기 준		조 정
중형 택시	주간	기본요금	3,000원/2km	<b>3,800원/2km</b>
		거리요금	100원 당 142m	100원 당 <b>132m</b>
		시간요금	100원 당 35초	100원 당 <b>31초</b>
	심야 (주간요금의 20% 할증)	기본요금	3,600원/2km	<b>4,600원/2km</b>
		적용시간	0 ~ 4시	0 ~ 4시
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	5,000원/3km	<b>6,500원/3km</b>	
	거리요금	200원 당 164m	200원 당 <b>151m</b>	
	시간요금	200원 당 39초	200원 당 <b>36초</b>	

○ 한편, 지난 택시요금 조정 당시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요금 인상 후 6개월 동안 납입기준금 동결, 납입기준금 동결 후 수입금 증가분만큼 납입기준금 인상, 납입기준금 인상액 중 간접비를 제외한(20% 이내) 전액 임금에 반영·지급(차기 택시요금 조정 시까지)” 등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강화로 개인택시 사업자에 비해 법인택시 사업자에게 택시요금 인상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점,

2019년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의 경우 개인택시는 1.1%까지 인하되었지만 법인택시는 1.6%에 머무르고 있어 개인택시 사업자에 비해 법인택시 사업자의 부담이 크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할 것임

※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변화 추이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선불	2.4%	2.1% (7월)	1.9% (8월)	1.5% (7월)	1.5%	1.5%	1.5%	1.5%	1.5%	1.5%	1.5%
후불	2.4%	2.4%	2.1% (7월)	1.9% (7월)	1.7% (12월)	1.7%	1.7%	1.7%	법인1.6% 개인1.5%	법인1.6% 개인1.5%	법인1.6% 개인1.1%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 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u>2019년 12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u>2021년 12월 31일까지</u> 그 효력을 가진다.